

최신 노동뉴스

2025년 12월



경상북도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내
평화의 탑

노무법인 익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 053-719-2408

📠 053-719-0019

< 차례 >

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참고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4
2.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등 국회 통과 법률	5
3.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 「노동절 정부포상」	6
[참고 3-1]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안내	7
4.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8
5. 외국인 고용사업장 감독 결과 발표	9
6. 서울 강남유명 치과병원 특별감독	10
7.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11
[참고 7-1]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세부내용	12
[참고 7-2]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개요	17
8.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특별감독	18
9.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19
10.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로 건강보호	20
[첨부 10]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HWPX	
11. 안전한 일터, 현장이 답이다!	21
[참고 11-1]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요	22
[참고 11-1] 사업장별 주요 발표내용 (제조, 기타, 건설)	23
12.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기준 변경	27
13.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포항·서산)	28
[참고 13]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개요	29
14. 아파 육아휴직 비중 약37%	30
[참고 14]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31
15. 중소기업 퇴직연금 용자지원 본격 시행	32

□ 기타 참고자료

[참고 21] 실노동시간 단축 주요 사례	33
[참고 22]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34
[참고 23]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및 이벤트 실시	35
[첨부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 가이드북	

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5. 11. 25.~'26. 1. 5.

-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틀 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 도모하기 위함

[추진 배경]

○ '26.3.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함

*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그 범위에서 교섭의무 부담

○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음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신설: 교섭단위 분리기준으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규정

②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

- 예를 들어, ①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②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③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교섭단위 분리 예시 】

① 개별 하청별 분리		②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③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원청노조	하청노조1	원청노조	하청노조1~3 (A직무)	원청노조	전체 하청노조
	하청노조2		하청노조4~5 (B직무)		
하청노조6~7 (C직무)					

-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고,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하여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

③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되며

-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하여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

[원청과 하청노조간 교섭 촉진을 위한 현장 지도]

-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
 -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 이와 함께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고,
 -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참고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①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시행령 안 제14조의11제3항 신설)
 - 교섭단위 분리신청 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
 -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 결정 시 노조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 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
- ②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사건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5제5항)
 -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공고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
 - 다만 현행 결정기간 10일 동안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간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제출 자료, 노사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판단
 -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이후에 교섭 진행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근거)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정, 결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노동위원회법 제23조),
 -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동위원회법 제31조)
- 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 외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직권조사 가능

2. 「근로자의 날」→「노동절」 등 국회 통과 법률

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

*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사용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미 ‘24년에 개정하여 2025.10.23.부터 시행 중

**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을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은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초과하면 1개월분의 연체금을 납부하나, 개정안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

3.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 「노동절 정부포상」

* 2026 노동절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 접수(' 25.11.26.~12.26.)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26.(수)부터 12.26.(금)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 내년 「노동절 정부포상」(舊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포상을 하는 첫 해

* 노동절 정부포상은 197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까지 17,817명에게 포상

○ 정부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플랫폼·특수형태·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고,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숨은 유공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할 계획

- 내년에는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 대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상위 훈격의 포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

* (포상규모안) 훈장(18점), 포장(18점), 대통령표창(55점), 국무총리표창(59점), 장관표창(60점)

○ 후보자 추천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추천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2026 노동절 정부포상 안내」 참조

-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2026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포상을 전수할 계획

참고 3-1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안내

되찾은
노동절
정부포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 간부를 찾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회사와 동료,
주변 이웃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플랫폼·특고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에 대해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5. **11.26. (수) ~ 12.26. (금)**

포상대상

- 국내취업자
- 해외근무자
- 노동조합 간부
- 근로 청소년
- 공무원
-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 숨은 유공자
- 5인 미만 종사자
 - 플랫폼 종사자
 - 특수형태 종사자
 - 청년·여성·장애인

주요 심사지표

<p>일자리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 품질개선·서비스향상, 진흥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산업재해예방 등</p>	<p>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노사관계제도 현장 정착, 노동자 권익보호 등</p>	<p>따뜻한 일터·지역사회 공헌에 기여 사회공헌(봉사)활동, 알 하청, 다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등 취약계층 저우개선 등</p>
--	---	--

포상내용

훈장,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포상별 공적기간(재직기간) 최저요건: 훈장 15년 이상, 포상 10년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 중 포상대상자 및 훈장 확정**
- 포상수여는 2026년 4월 말 예정

신청 및 접수

신청(추천)서류 | 신청추천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접 수 기 간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
접 수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기 타 사 항 |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포상 계획과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문의처 |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

4.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가담 근로자들도 기소의견 송치(중부지방고용노동청)

○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를 구속 기소하고, 공모자 및 허위근로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 구속했고

- 공모자인 ○○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25.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 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피의자 ㄱ, ㄴ 씨가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은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로,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이 1억 5백만원에 이르고, 그중 6천 6백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 더욱이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자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하여 2천 8백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 이번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 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해 잠적하자, 6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피의자 ㄱ 씨를 집 앞에서 체포하여 구속했다.

5. 외국인 고용사업장 감독 결과 발표

-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182개소에서 17억 체불과 846건 법 위반 적발)
-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등 노동·체류 여건 지속 개선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 1차 4.28.~6월 말, ▲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 주로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

○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 또한, ▲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기업 ▲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

-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

6. 서울 강남유명 치과병원 특별감독

- 위약 예정 계약,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관련 특별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ㄷ 치과병원'에 대해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되어, 이를 바탕으로 11.20.(목)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 퇴사 1개월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

-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

* 단톡방에 욕설, 면벽 수행 및 반성문 벌칙 등

○ 고용노동부는 11.24(월).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하여,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서는 안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 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다.” 라고 밝혔다.

※ 위약 예정 관련 법 조문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7.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잠정 결과, 2025. 3분기까지 누계

-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전년 동기 443명(411건) 대비 14명(3.2%) 증가
 - (업종별) ▲건설업 210명(200건)으로 7명(3.4%) 증가(건수 동일)
 - ▲제조업 119명(115건)으로 15명(11.2%) 감소(7건 증가)
 - ▲기타업종 128명(125건)으로 22명(20.8%) 증가(22건 증가)
 - (규모별) ▲50인(억) 이상은 182명(170건)으로 12명(6.2%) 감소(4건 증가)
 - ▲50인(억) 미만은 275명(270건)으로 26명(10.4%) 증가(25건 증가)
 - (유형별) 끼임, 화재·폭발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 무너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20명, +11명), 농림어업(19명, +10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 것과
- * (도·소매업) 운반 작업 중 지게차·트럭 등에 부딪힘 등 (농림어업) 쓰러지는 별도목에 맞음, 임산물 채취 중 나무에서 떨어짐 등
-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건설업은 2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기장 화재사고 6명, 세종 -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4명)의 영향도 있었으나,
 -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증가 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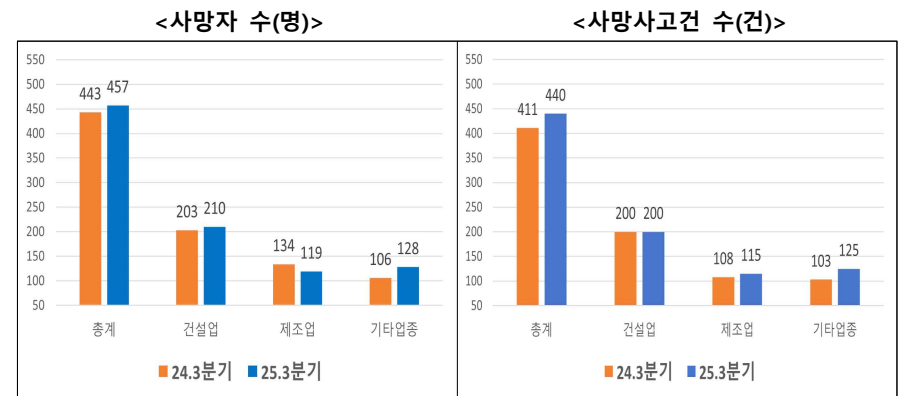
[참고 6-1]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세부내용
 [참고 6-2]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개요

참고 7-1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세부내용

1. 총괄

- 건설업 210명(200건), 제조업 119명(115건), 기타업종 128명(125건) 발생
 -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이 7명(+3.4%)증가, 건수 동일, 제조업은 15명(△11.2%) 감소, 7건(+6.5%) 증가, 기타업종은 22명(+20.8%), 22건(+21.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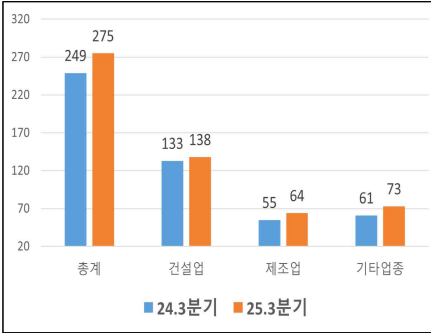
구분	구분	총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사망자수 (명)	'24.3분기	443	203	134	106
	'25.3분기	457	210	119	128
	증감	+14	+7	△15	+22
	증감률	+3.2	+3.4	△11.2	+20.8
사망사고 건수 (건)	'24.3분기	411	200	108	103
	'25.3분기	440	200	115	125
	증감	+29	0	+7	+22
	증감률	+7.1	0.0	+6.5	+21.4

2. 업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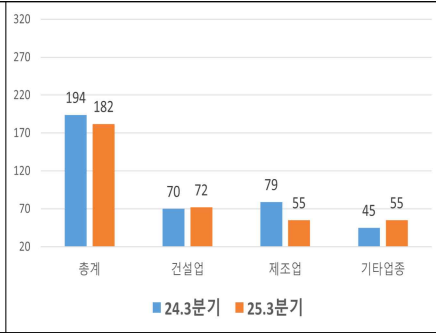
- 「50인(억) 미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은 5명(+3.8%), 5건(+3.8%) 증가, 제조업은 9명(+16.4%), 7건(+12.7%) 증가, 기타업종은 12명(+19.7%), 13건(+22.0%) 증가

- 「50인(억) 이상」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은 2명(+2.9%) 증가, 5건(△7.2%) 감소, 제조업은 24명(△30.4%) 감소, 건수 동일, 기타업종은 10명(+22.2%), 9건(+20.5%) 증가

<50인(억) 미만 사업체 사망자 수(명)>



<50인(억) 이상 사업체 사망자 수(명)>



구분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합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소계	50억 미만	50억 이상	소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소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망자수 (명)	'24.3분기	443	249	194	203	133	70	134	55	79	106	61	45
	'25.3분기	457	275	182	210	138	72	119	64	55	128	73	55
	증 감	+14	+26	△12	+7	+5	+2	△15	+9	△24	+22	+12	+10
	증감률	+3.2	+10.4	△6.2	+3.4	+3.8	+2.9	△11.2	+16.4	△30.4	+20.8	+19.7	+22.2
사망사고 건 수 (건)	'24.3분기	411	245	166	200	131	69	108	55	53	103	59	44
	'25.3분기	440	270	170	200	136	64	115	62	53	125	72	53
	증 감	+29	+25	+4	0	+5	△5	+7	+7	0	+22	+13	+9
	증감률	+7.1	+10.2	+2.4	0.0	+3.8	△7.2	+6.5	+12.7	0.0	+21.4	+22.0	+20.5

- 한편, 「50인(억) 미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6명(+10.4%) 증가했는데, 5인(억) 미만에서 27명(+24.5%) 증가, 5~50인(억) 미만에서 1명(△0.7%) 감소

구분 (명, %)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합계	5인(억) 미만	5~50인(억) 미만	소계	5억 미만	5~50억 미만	소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소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24.3분기		249	110	139	133	72	61	55	12	43	61	26	35
'25.3분기		275	137	138	138	91	47	64	4	60	73	42	31
증 감		+26	+27	△1	+5	+19	△14	+9	△8	+17	+12	+16	△4
증감률		+10.4	+24.5	△0.7	+3.8	+26.4	△23.0	+16.4	△66.7	+39.5	+19.7	+61.5	△11.4

【참고: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기준) 사고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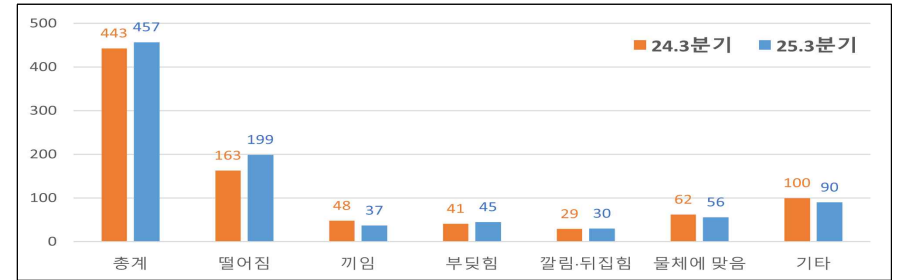
구분 (명)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합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인 이상	소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인 이상	소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인 이상	소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인 이상
'24.3분기	443	77	186	180	203	39	108	56	134	12	43	79	106	26	35	45
'25.3분기	457	99	178	180	210	53	87	70	119	4	60	55	128	42	31	55
증 감	+14	+22	△8	0	+7	+14	△21	+14	△15	△8	+17	△24	+22	+16	△4	+10
증감률	+3.2	+28.6	△4.3	0.0	+3.4	+35.9	△19.4	+25.0	△11.2	△66.7	+39.5	△30.4	+20.8	+61.5	△11.4	+22.2

③ 유형별

- 「물체에 맞음」 56명(비율 12.3%), 「끼임」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9.7%), 11명(△22.9%)감소
- 「떨어짐」 199명(비율 43.5%), 「부딪힘」 45명(9.8%), 「깔람·뒤집힘」 30명(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명(+22.1%), 4명(+9.8%), 1명(+3.4%) 증가

* 기타: ▲(화재·폭발) 26명(△17명, 39.5%) ▲(무너짐) 23명(+5명, 27.8%) 등

<유형별 사망자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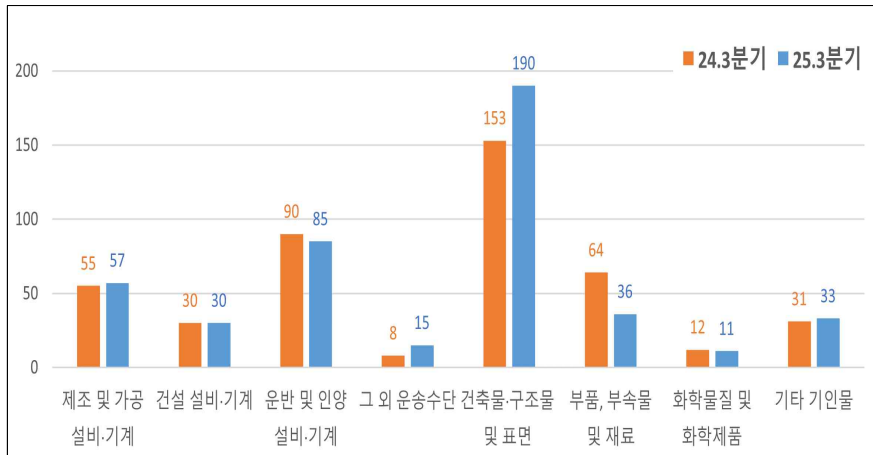
구분	총계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람·뒤집힘	물체에 맞음	기타	
사망자수 (명, %)	'24.3분기	443	163	48	41	29	62	100
	비율	100.0	36.8	10.8	9.3	6.5	14.0	22.6
	'25.3분기	457	199	37	45	30	56	90
	비율	100.0	43.5	8.1	9.8	6.6	12.3	19.7
증 감	+14	+36	△11	+4	+1	△6	△10	
증감률	+3.2	+22.1	△22.9	+9.8	+3.4	△9.7	△10.0	
사망사고 건 수 (건, %)	'24.3분기	411	163	48	39	28	62	71
	비율	100.0	39.7	11.7	9.5	6.8	15.1	17.3
	'25.3분기	440	198	37	44	30	56	75
	비율	100.0	45.0	8.4	10.0	6.8	12.7	17.0
증 감	+29	+35	△11	+5	+2	△6	+4	
증감률	+7.1	+21.5	△22.9	+12.8	+7.1	△9.7	+5.6	

4 기인물별

○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19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85명,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57명 순으로 발생

-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37명, +24.2%),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2명, +3.6%), 「그 외 운송수단」(+7명, +87.5%)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건설 설비·기계」는 전년 동기와 동일,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5명, △5.6%), 「부품, 부속물 및 재료」(△28명, △43.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명, △8.3%)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기인물별 사망자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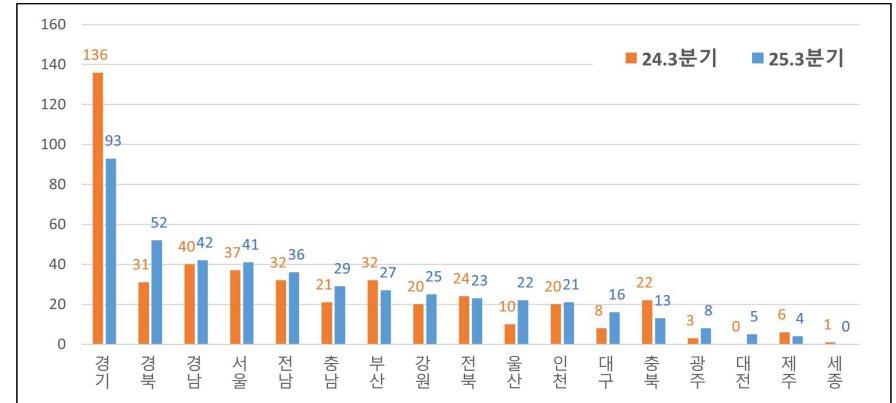
구분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건설 설비·기계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그 외 운송수단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부품, 부속물 및 재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 기인물	
사망자수 (명)	'24.3분기	55	30	90	8	153	64	12	31
	'25.3분기	57	30	85	15	190	36	11	33
	증 감	+2	0	△5	+7	+37	△28	△1	+2
	증감률	+3.6	0.0	△5.6	+87.5	+24.2	△43.8	△8.3	+6.5
사망사고 건수 (건)	'24.3분기	54	30	87	7	152	42	10	29
	'25.3분기	50	30	84	14	185	36	8	33
	증 감	△4	0	△3	+7	+33	△6	△2	+4
	증감률	△7.4	0.0	△3.4	+100.0	+21.7	△14.3	△20.0	+13.8

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 경기(93명), 경북(52명), 경남(42명), 서울(41명), 전남(36명), 충남(29명), 부산(27명), 강원(25명), 전북(23명), 울산(22명) 등 순으로 발생

- 전년 동기 대비 경북(+21명), 울산(+12명), 충남·대구(+8명) 등에서 증가, 경기(△43명), 충북(△9명), 부산(△5명), 제주(△2명) 등은 감소

<광역자치단체별 사망자 수(명)>



구분	합계	경기	경북	경남	서울	전남	충남	부산	강원	전북	울산	인천	대구	충북	광주	대전	제주	세종	
사망자수 (명)	'24.3분기	443	136	31	40	37	32	21	32	20	24	10	20	8	22	3	0	6	1
	'25.3분기	457	93	52	42	41	36	29	27	25	23	22	21	16	13	8	5	4	0
	증 감	+14	△43	+21	+2	+4	+4	+8	△5	+5	△1	+12	+1	+8	△9	+5	+5	△2	△1
	증감률	+3.2	△31.6	+67.7	+5.0	+10.8	+12.5	+38.1	△15.6	+25.0	△4.2	+120.0	+5.0	+100.0	△40.9	+166.7	-	△33.3	△100.0
사망사고 건수 (건)	'24.3분기	411	114	30	37	35	32	21	30	19	24	9	20	8	22	3	0	6	1
	'25.3분기	440	89	51	41	40	33	29	22	25	22	22	20	16	13	8	5	4	0
	증 감	+29	△25	+21	+4	+5	+1	+8	△8	+6	△2	+13	0	+8	△9	+5	+5	△2	△1
	증감률	+7.1	△21.9	+70.0	+10.8	+14.3	+3.1	+38.1	△26.7	+31.6	△8.3	+144.4	0.0	+100.0	△40.9	+166.7	-	△33.3	△100.0

6 내·외국인별

○ 총 457명 중 내국인 397명(86.9%), 외국인 60명(13.1%) 발생

구분 (명, %)	총계		건설		제조		기타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5.3분기	60	(13.1)	210	27 (12.9)	119	18 (15.1)	128	15 (11.7)

참고 7-2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개요

□ 통계 개요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22년 1분기부터 대외 발표(보도자료 배포)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한 수치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 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분석

□ 공표 주기

- 잠정 통계는 1~3분기는 익익월말, 연간 통계는 다음 연도 3월 말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
- 확정 통계*는 다음 연도 9월 말에 확정하여, 12월 말에 공표
 - * 잠정 통계에서 다음연도 9월까지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 제외

공표 내용		공표시기
잠정치	1분기 발생사고	익익월 말(해당연도 5월)
	2분기 발생사고(누적)	익익월 말(해당연도 8월)
	3분기 발생사고(누적)	익익월 말(해당연도 11월)
	연간 발생사고	다음연도 3월말
확정치	연간 발생사고	다음연도 9월말 확정 → 12월말 공표

※ 전년 동기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①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분기별 잠정치, ②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연간 확정치 간에 비교를 통해 산출

□ 참고 사항

-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승인 기준이며,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하는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와 차이가 발생함

8.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특별감독

* 특별감독기간: '25. 11. 25.(화)부터 8주간(필요시 연장)

- 시공사인 (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전국 주요 공사현장 29개소 및 본사 특별감독
- 전국 주요 철거현장 47개소 붕괴 예방조치 긴급 점검

- 고용노동부는 11.6.(목)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사망 7명, 부상 2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현장 시공사인 (주)에이치제이중공업 전국 시공현장 중 주요 공정 진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29개소 및 본사에 대하여 11.25.(화)부터 8주간(필요시 연장)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산업안전 + 근로기준 통합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조치할 계획
-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11.25.~, 4주간)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철거공사 시 예견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할 예정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라면서 “동일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9.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 10.29.부터 연말까지, 매월 2회, 매회 1주일간 전국적 집중점검주간 운영
-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
 -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
 -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하였고
 - 2차로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운영하였다.
-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 따라서,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0.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로 건강보호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 운영
- 한파특보 다발지역 및 취약 업종(환경미화·건설업) 대상 집중관리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에 따라

○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

-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①따뜻한 옷, ②따뜻한 쉼터(휴식), ③따뜻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 신고

○ 둘째,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

-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

11. 안전한 일터, 현장이 답이다!

-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체험형 안전혁신을 이끄는 우수 실천사례 발굴·시상
- 첨부 사업장별 우수사례를 위험성평가 실시에 참고할 필요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월 25일(화)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산재예방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 올해 대회에는 총 674개 사업장(제조·기타 415개소, 건설 259개소)이 참여하여 지역 발표대회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16개 기업이 본선 발표 무대에 올랐다. 심사에는 노동자와 안전관리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 효과성과 중소기업의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수여되고, 수상기업 대표 등은 동종업계 위험성평가 사례 교육의 우수기업 강사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대표이사가 위험성평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사소한 의견이라도 100% 개선!, ▲위험 제안부서는 개선업무 제외!, ▲위험성평가 기간 매일 1시간 생산중단! 등 특별지시를 내려 추진한 사례, 위험성평가를 통해 제시된 작업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현장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이 눈에 띄었다. 이는 작은 사업장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로 현장 확산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고 10-1]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요 1부

[참고 10-2] 사업장별 주요 발표내용 1부

참고 11-1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요

□ (일시) '25. 11. 25.(화) 13:00 ~ 17:00

□ (장소)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 참석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지원과장·건설과장 등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실장·건설안전실장 등
- (사업장) 본선 진출 사업장 16개소의 안전보건관계자 등 150여명

□ 주요내용

- [경과] ①접수(5.2~7.25, 674개소) → ②7개 지역별 발표대회(9.9~9.24, 115개소) → ③본선 예비심사(10.16~10.17, 56개소) → ④본선 발표대회(11.25, 16개소)
 - [차담회]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공단 이사장, 수상기업 16개 사업장 관계자 등 22명
 - [시상] 장관상 8점(대상4·최우수상4), 이사장상 8점(우수상4·장려상4)
- * 4개 분야(제조대, 제조^중수, 건설대, 건설^중수)별 대상·최우수·우수·장려 각 1점

□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장소
1부 심사	12:30~13:00 (30')	발표순서 추천 및 자료 확인	
	13:00~13:10 (10')	개회	
	13:10~15:20 (130')	제조·기타 우수사례 발표 (130')	로얄홀(3F)
		건설 우수사례 발표 (130')	파크홀(1F)
2부 차담회,	15:30~16:10 (40')	차담회 *수상기업 16개소* - 우수사례 발표대회 소감 등	루비홀(2F)
		'안전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강연	로얄홀(3F)
시상	16:20~16:35 (15')	기념사(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공단 이사장) 심사평 발표(분야별 심사위원장)	로얄홀(3F)
	16:35~17:00 (2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총 16점, 장관상 8점, 이사장상 8점) * 시상 후 전체 기념촬영	
	17:00~	폐회	

참고 11-2

사업장별 주요 발표내용 (제조, 기타, 건설)

□ 제조·기타 분야(8개소)

구분	사업장명	사업장 개요	우수사례 주요내용
제조·기타(대)	아진산업(주)	업종:제조업 (자동차부품) 근로자: 366명 소재지:경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와 함께 만드는 미래형 안전현장 ▪ [경영책임자 안전리더십으로 현장 작동성 강화] 경영책임자 주관 순회점검·회의, 위험성평가 특별 지시사항*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소한 의견이라도 100% 개선 ▲ 위험 개선업무 시 제안부서 제외 ▲ 위험성평가 기간 매일 1시간 생산중단 ▲ 위험발굴 시 반드시 근로자 면담·설문조사 실시 ▪ [Si기반 안전시스템 구축] 카메라와 연동된 Si를 통해 위험 구역에 노출된 근로자의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실행 시스템 도입 ▪ [휴먼에러 제로화] 안전수칙 위반자 스티커 발부(주의·경고·징계), 휴먼에러 예방 교육(위험예지훈련, VR체험)
	에이치에스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	업종:제조업 (탄소섬유) 근로자: 458명 소재지: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분임조! 안전한 일터의 심장! ▪ [전 임직원 위험성평가 참여] 모든 임직원·협력사가 참여한 안전보건 분임조 활동(위험발굴·개선), 자율안전보건체계 정착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발굴·개선, 안전제안, 아차사고, 안전규칙 위반, 참여 ▪ [분임조 활동의 강력한 동기부여] 매일 활동점수*에 따른 포상으로 분임조 참여 동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발굴·개선, 안전 제안, 아차사고 조사, 안전규칙 위반, 참여 인원정도에 따른 점수, '24년 포상금 총 34,340천원 ▪ [우수사례 글로벌 확산] 국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의 해외사업장 적용으로 글로벌 차원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에 기여
	오비맥주(주) 광주공장	업종:제조업 (맥주) 근로자: 320명 소재지: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R 원칙과 디지털 혁신으로 자율안전 우리가 만든다! ▪ [3R 기반 위험성평가 체계 강화] 책임부여! 자원지원! 포상으로 근로자 참여 유도 및 자율안전문화 구축 ▪ [디지털 위험발굴시스템 구축] 위험발굴시스템(DST)을 구축, 접근성 향상 및 발굴 현황 시각화로 위험성평가 활동 강화 ▪ [스마트 Tool 기반 역량 수준 향상] 스마트 툴(챗봇, 안전쇼츠, 안전정보QR)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이해도·실천력 향상
	한솔로지스틱스(주)	업종:서비스 (물류) 근로자: 275명 소재지: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을 말하면 안전이 다 이루어질지니! ▪ [경영진-근로자 양방향 위험발굴] 경영진 현장 점검, 근로자의견 기반 현장 검증과 피드백을 통해 근원적 개선대책 실행 ▪ [직접 듣는 경영진 리뷰세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경영진 리뷰세션 정기 개최로 신속한 집행과 전폭적 투자 지원 ▪ [첨단 AI/IT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개선] 지게차 AI 모션감지장치, 화물차량 추락방지시설, 레이더 관제시스템, 보행로 완벽분리

제조·기타(중소)	건설하이콘(주) 김포공장	업종:제조업 (레미콘) 근로자:19명 소재지: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핵심가치(안전·건강한일터)의 실현 ▪ [위험성평가 체질 개선으로 제약 극복]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예산사용기준 마련 및 매월 집행내역 관리), 위험성평가 절차 재정립 등 기초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실행 기반 마련 ▪ [위험성평가의 전 구성원 참여] 근로자 참여 방법을 다각화하고 소액의 포상을 꾸준히 실시하여 지속적 관심 유도 ▪ [위험성평가 간소·다각화] 비정형·긴급 작업 시 주요 위험 위주의 체크리스트 평가방법으로 전환하여 행정적인 부담 완화
	리뉴어스(주) 경산사업소	업종:서비스업 (하수, 분뇨처리) 근로자:36명 소재지:경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만든 안전문화, 리뉴어스 안전 START ▪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작업증지권 활성화 캠페인, 위험성평가 참여 우수사례 포상 등 인센티브 도입 ▪ [QR 기반 '안전 START' 시스템 구축] 근로자들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기획·제작을 통해 경력 3년 미만 근로자(전체의 50%)들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작업장소에 게시된 QR코드로 작업증지권, 사고사례, 작업절차서,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수칙 정보 제공 ▪ [위험요인 누락 제로!] 사남·설비·환경요인뿐만아니라 세부 작업 단계별로 잠재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현장 근로자와 함께 발굴·개선
	(주)제이비엘로지스틱스	업종:서비스업 (물류) 근로자:36명 소재지: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의 key point 근로자 참여 ▪ [근로자 참여는 조직 구성부터] 근로자 위험성평가단을 구성하여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신설,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설문, 체크리스트 등)을 도입하여 위험요인 발굴 ▪ [매일확인, 매주발표 감소대책 실천력 향상] 매일 모니터링을 통한 감소대책 이행 확인 및 주간 회의 시 발표를 통한 팀별 이행 내용 공유 ▪ [한눈에 보이는 핵심 위험성평가]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시각자료 위주의 OPS 제작을 통한 결과 공유 활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 연구센터	업종:서비스업 (연구업) 근로자:45명 소재지:영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하고 강화하고 맞춤으로! '현장 중심' 위험성평가! ▪ [내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내·외부전문가의 순회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의 시각지대 해소 및 평가 신뢰성 강화 ▪ [수급업체가 상생 가능한 안전 인프라 강화] 단기 작업 수급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조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작업 컨설팅 지원, ▲혼재작업 예방, ▲교육지원, ▲점검 등 ▪ [전공정 맞춤 안전교육 실시] 다양한 연구로 업무별 연계성이 낮은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교육

□ 건설 분야(8개소)

구분	사업장명	사업장 개요	우수사례 주요내용
건설 (대)	(주)대림 김해대동 A44블럭 물류센터 신축	업종: 건설업 공사금액: 1,271억 소재지: 경남 김해	<p>❖ 현장 구역구역, 안전 DNA 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센터 대형사고 근본원인 제거] 3대 물류 대형사고(화재, 붕괴, 추락) 사전 예방을 위한 불연 자재 사용 및 설계·구조 변경 ▪ [안전 DNA를 근로자에게] 경진대회, 신문고, 안전리더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체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Back to the Basic]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위해 현장 3대 중점관리 사항을 지정하고 안전작업절차를 마련하여 지속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작업허가서, 화재작업, ▲ 장비(전문가 점검, 신호수, 충돌) ▲ 추락(사다리, 말비계, 곤돌라 등)
	(주)반도건설 고양 장항지구 M-1블럭 주상복합 신축	업종: 건설업 공사금액: 6,112억 소재지: 경기 고양	<p>❖ 위험성평가, 모두 함께! 스마트하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안전역량 강화]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자로 제작·교육, 위험성평가 참고자료 상시 제공 ▪ [모두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일일안전당직자 활동'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확인 및 추가 위험요인 발굴, 5to9 회의를 통해 결과 공유 등 형식적인 참여문화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참여형태로 강화 ▪ [AI 자동번역 스마트 위험성평가] AI 자동번역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국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우미건설(주) 을지로3가 업무시설 개발사업 신축	업종: 건설업 공사금액: 1,382억 소재지: 서울 중구	<p>❖ 근로자 참여와 스마트 안전관리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실천하는 상시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상시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 강화 ▪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과 근로자 복지 강화] 고위험군 근로자(고령·외국인)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2인1조 작업제, 휴게시설 확충 등 복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 [설계단계에서 선제적 위험예방으로 안전문화 정착] 도심지 공사의 복합 위험(공간협소, 지하철 인접, 보행자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위험요인 분석
	자이씨앤에이 (주) 씨젠 하남M센터 B동 신축	업종: 건설업 공사금액: 229억 소재지: 경기 하남	<p>❖ 모두가 주인공인 위험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Con 안전관리 계획 수립] 착공 전 공정·공법별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공법 검토 및 시공계획에 반영 ▪ [근로자가 참여하는 일일위험성 평가] 관리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전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일일 위험성평가 실시로 안전의식 강화 ▪ [스마트 안전과 감성안전의 하모니] 스마트 안전(드론, 3D모델링)과 감성 안전(커피차, 흑서기 간식)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 위험 예방과 근로자 만족도 동시 향상

건설 (중소)	(주)남양 에스티엔	업종: 전문건설업 (정보통신) 소재지: 광주 광산	<p>❖ 현장마다 달라요! 정보통신공사 맞춤형 위험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단발성 현장 맞춤형 위험성평가 절차 구축] 단시간·다빈도 작업 특성에 맞게 실시팀, 작업팀의 이중평가와 위험성평가 협의체를 통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보드로 결과 상시 공유 ▪ [근로자 전원 참여형 안전관리 문화 정착] 안전당직제 운영으로 전원이 월 1회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전사적 안전의식 향상 ▪ [현실 안주를 허락하지 않는 힘, KOSHA-MS]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매년 심사를 계기로 실천 중심, 지속가능한 개선체계 정착
	두원이엔지 (주)	업종: 전문건설업 (전기) 소재지: 경기 평택	<p>❖ 안전문화활동으로 쉽게 접근하는 위험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가 만드는 자율안전문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과 포상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위험요인 발굴과 안전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안전메시지, 안전자격증 취득 ▲ 위험예지 경진대회(77팀 참여) ▲ 안전문고 공모(2편) ▲ 작업중지권 활성화 ▲ 핫라인 구축 ▲ 안전동영상 공모 ▪ [안전 상호개입 캠페인] 외부의 시선에서 먼저 발견될 수 있는 불안정한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누구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문화 정착 ▪ [일관되고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적합성·유효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절차 개정·시행, 일관된 위험성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 참여 기준 확립
	(주)인양종합 개발 창원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	업종: 건설업 공사금액: 21억 소재지: 경남 창원	<p>❖ 위험의 부리를 제거하고, 안전의 길을 뚫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선순환 위험성평가 체계] W(계획)·E(실행)·H(조치)·U(개선)·M(유지) 사이클 기반 위험성평가 체계 도입 ▪ [근본적 위험 제거를 위한 노력] 고위험, 고반복 작업 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교통차단 무인화, 로봇삭초, AI CCTV 등) ▪ [근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방문 건강관리와 작업개선 지도 시행
	(주)태일 씨엔티	업종: 전문건설업 (철콘 비계) 소재지: 서울 금천	<p>❖ 임의작업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도식화가 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계획 도식화를 통한 근로자 이해도·실행력 제고] 팀 리더가 근로자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안전작업 계획 설명, 무계획 임의작업 근절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도 향상 ▪ [자발적 작업중지권 행사] 작업중지권의 자발적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중지 사례에 대한 포상 실시 ▪ [대표의 안전보건 Message 전파로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대표이사 명의 메시지로 전 현장에 공유하여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전파

12.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기준 변경

-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1.25. 국무회의 의결 (2026년부터 시행 예정)
-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 개편

<1> 적용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징수기준 변경: 월평균보수 → 실 보수

-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소득세법」 개정으로 '27.1.1.부터 사업주는 상용근로자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 예정

<3> 급여기준 변경: 임금 → 실 보수

-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13.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포항·서산)

- 철강·석유화학 위기를 겪는 포항·서산 고용위기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정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12]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개요

참고 13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개요

-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지원
- (지정기준) ①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②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③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
 - * ① 재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 ② 주된산업: 주된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
 - ③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 ④ 예외조항: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지정기간) 최대 6개월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80% · (대규모기업) 휴업수당의 60~7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단가의 130% · (1,000인 미만 기업) 기준단가의 80% · (1,000인 이상 기업) 기준단가의 7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5년간 500만원 한도
	지원비율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지원율
국민취업지원제도II	소득요건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3개월 전부터 퇴사한 실직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 1인당 총 2천만원(월 2백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 1인당 총 2.5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 1인당 총 1.5천만원

14. 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37%

○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엔 지원 더욱 확대

-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 → 250만원, 나머지 시간 150만원 → 16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 월 지급 한도 인상: ('25년) 월 120만원 → ('26년 정부안) 30인미만 월140만원, 30인이상 월130만원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50%를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 폐지 ✓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 1개월에 대한 지원 추가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 월 지급 한도 인상: ('25년) 월 20만원 → ('26년 정부안) 30인미만 월 60만원, 30인이상 월 40만원 ✓ 신청 서류 간소화
<신설>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 위탁기관을 통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밀착형 정보제공 및 정부지원 연계

[참고 13]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참고 14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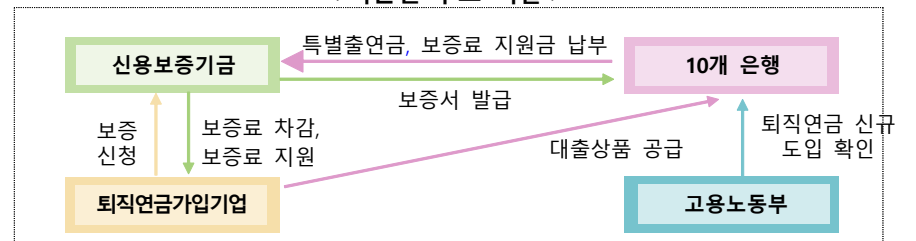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제도명	제도 설명	개선 내용	현행	개선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1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신설	-	<사업주> 월 30만원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권역별 주요 산단·테크노파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핵심 타겟으로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 상담 등 정부 지원 연계	신설	-	사업비 9.5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만원 <나머지> 150만원	<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 등 지원	지원대상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까지 확대

15. 중소기업 퇴직연금 용자지원 본격 시행
*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이 함께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 10개 은행은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IM, 경남, 광주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5억원, 총량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을 지원할 예정

< 기관별 주요 역할 >



- ※ **특별출연 협약보증** : 보증비율 3년간 100%,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 '보증료 지원'
- ※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

- **지원대상**
 -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 ※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 :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가능
- **지원대상**
 - 용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
- **지원절차**
 - ① (신보) 보증신청 및 상담 → 자료제출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② (은행) 대출 실행(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

참고 21

실노동시간 단축 주요 사례 ((주)태웅로직스)

▲(업종) 국제 물류 서비스업, ▲(설립연도) 1996년, ▲(대표자) 한재동
▲(근로자 수) 400명,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95(태웅빌딩 5층)

사례 '20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및 '22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인
라 구축비 지원(2천만원)을 계기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지
추진**

1. 중요한 건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eForm(OZReport)** 및 **DELL Server PowerEdge R740** 구축으로 **중이 문서 전자화 등 추진**, **자제 개발한 TAS(차세대 물류 시스템), TMS(물류 통합관리 시스템)** 등 활용으로 **실시간 업무 관리 및 데이터 효율화 등**
- ✓ **대면보고 축소 및 디지털 협업으로 스마트하게 일하기 추진** :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화상회의 프로그램(WEBEX) 구축활용, 모바일 TMS 도입, 이력서 시스템 활성화 등
- ✓ **신규 인력 지속 확충**으로 기존 인원의 업무 부담은 완화 : (신규 채용) '21년 106 → '22년 91 → '23년 77 → '24년 76명

2. 조직문화 개선부터! : 제로백 캠페인, 관리자 교육 강화

- ✓ **제로백 캠페인**(야근 제로, 연차 100%) **전사적 홍보** : 포스터 제작, 부서별 실천 독려 등
- ✓ **팀장부터 맞춤형 교육**(신입, 고급, 인사평가, 성과관리, 리더십 과정 등)으로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 확립**

3. 근무시간 선택 권한은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 유연근무 활성화

- ✓ **사차출퇴근제** **순 직원** 선택 사용(A형(08:00~17:00), B형(09:00~18:00), C형(10:00~19:00))
- ✓ **임산부, 거동 불편자 등**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은 **팀 재량으로 재택근무 시행**

4. 직원이 잘 쉬어야 회사 성과도 나온다! : 연차휴가 활성화

- ✓ **연차 사용 촉진** : 활용 독려 캠페인, 연차 사용 시스템 구축, 부서 포상 등
- ✓ **힐링 휴가 권장**(팀장 이상 **년 10일 이상 장기 휴가**), **반차 가능, 장기근속 포상 휴가**(10년 이상 3일, 20년 이상 5일, 30년 이상 7일 유급휴가) 등

〈'21년 이후 주요 변화〉

구분	2017~2020 (4개년 평균)	2021~2024 (4개년 평균)	변화율
연간 초과 근무시간	10,450	8,638	▼17%
1인당 초과근무 횟수	17	8	▼49%
1년 미만 퇴사자 수(명)	28	15	▼48%
1년 미만 퇴사율	29%	15%	▼14%p
연차사용률	77%	84%	▲7%p
매출액(백만원)	262,243	848,729	▲224%
영업이익(백만원)	10,896	58,535	▲437%

* ('21) 일터혁신 우수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24) 남부고용평등 우수기업, 공정채용 어워드 고용노동부 장관상

참고 22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 국내 유일 산재예방 종합플랫폼 구축, 컨설팅자금지원교육 등 통합 정보 플랫폼
- 보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따른 사업장별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

○ 안전보건공단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정식 오픈했다.

-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인증 방식(Any-ID)을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다.

○ 이번 '산업안전포털' 구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 사업장의 업종, 규모, 보유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작업환경 개선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별 다른 안전보건 수준과 작업환경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전보건교육 정보, 컨설팅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사 업종에서 활용 중인 각종 안전보건 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메일, 문자, 알림톡 등 알림기능을 통해 법정 안전검사 점검 시기, 안전보건교육 등 주요 안내사항도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참고 23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및 이벤트 실시

-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 협업으로
- 확정급여(DB)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및 초성이벤트 퀴즈 실시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

-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퀴즈 이벤트’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초성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12월 9일(화)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을 맞힌 참여자 5,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음료)을 제공할 예정이다.

[첨부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 가이드북.PDF